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1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최호정, 강석주, 경기문, 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상욱, 이은림, 이종태, 장태용, 최민규, 최윤희, 최진혁, 허훈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-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을 명확화·현실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기관방문 기준을 평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으로 함(별표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항목의 심사기준란 제4호의 “1일”을 “평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 표]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6조제2항 관련)				[별 표]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(제6조제2항 관련)			
항목	심사기준	예	아 니 오	항목	심사기준	예	아 니 오
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. ~ 3. (생 략)			기본계 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	4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,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		4. 평일 ----- ----- ----- -		